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6년 3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3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시대환경의 변화, 세입기금의 중단, 내무부의 사업폐지 지침 (관련훈령폐지) 등제도변경으로 인하여
- 도에서의 운영관리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
- 잉여자금은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폐지조례 부칙에 명시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검토한바 동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농민의 정착의식 제고와 우수농고생 및 경제작물 육성을 위한 농고지원사업과 낙후마을 특별지원사업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해 1982년 8월 6일 제정 시행 하여온 조례였으나, 오늘날 시대환경 및 정책사업결정방향 변화와 제도의 변경등에 의하여 90년도이후 중앙자금지원이 중단되는등 동 조례에 의한 계속적인 자금 운영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실태인바, 특히 우수농고생 지원사업은 융자금이 적고, 융자금을 지원 받은 학생도 농촌에서 영농에는 종사치 않고 대도시 및 농공단지에 취업하는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됨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있어 조례만으로는 준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하는 것임.
- 다만, 이조례시행당시 융자된자금의 미회수상환금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폐지조례 부칙 조항에
 - '96년도 회수액은 일반재원화하고
 - '97년이후 회수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입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것으로 사료 됨.

6. 첨부

-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 (안)